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53 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김도읍・김태흠・구자근

추경호 • 유상범 • 유의동

한무경 • 안병길 • 조수진

윤창현 의원(총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,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,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 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운용주체인 법원행정처장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・	제30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③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재
	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
	노력하여야 한다.
③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